

업무협력약정서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공항공사는 우리나라 공항건설·개발 분야의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, 양 기관간 신의성실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약정은 해외건설협회와 한국공항공사가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내용 및 범위)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공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.

- ① 해외공항 건설·개발, 유지관리 및 한국공항공사 개발 R&D 장비설치 등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
- ② 해외 각 국에 대한 공항분야의 전문가 파견사업, 개발 및 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
- ③ 해외 공항 시장개척 지원사업, 민관 합동 수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
- ④ 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및 지원
- ⑤ 해외 공항개발 관련 세미나, 설명회 등의 공동개최
- ⑥ 기타 상호 관심사에 관한 협력활동

제 3 조 (실무업무 협의)

양 기관은 본 약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느 한 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호 업무협의를 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 4 조 (경비부담)

본 약정에서 규정한 업무협조 수행시 발생하는 제경비의 사용 및 정산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5 조 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본 협정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 (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)

-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 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②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약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,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0년 7월 13일

이 재균

해 외 건 설 협 회

회 장 이 재 균

성 시 철

한 국 공 항 공 사

사 장 성 시 철